



#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일부개정법률안

지식경제부

지식경제부는 '10.7.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. 개정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발췌 게재한다.

## 1. 개정 이유

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심의·의결사항 및 국가정책조정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, 벌크로리 위탁운송사업 제도 도입에 따른 각종 제도를 보완 하며 그 밖에 행정효율화, 가스사고 예방 및 소비자 권익보호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

## 2. 주요 내용

-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인구 50만 이상의 시장에게도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권한을 부여함(안 제3조제1항)
- 액화석유가스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관리책임의 명확화를 위해 벌크로리 위탁운송사업자(충전사업자 등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벌크로리로 소형저장탱크에 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) 등록제를 도입코자 함(안 제6조의3)
-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LPG품질검사 위반업체에 대한 공표근거를 마련함(안 제26조제5항)
- 액화석유가스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가격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등의 판매가격 보고를 의무화 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8조의2)

###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친구조문 주요내용 대비표

현행	개정(안)
<p>제2조 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~9. (생략) 〈신설〉</p> <p>〈신설〉</p> <p>10.·11. (생략) 12.“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”이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,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,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, <u>가스용품 제조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</u>를 말한다. 13. (생략) 제3조 (사업의 허가 등)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가스용품 제조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〈단서 신설〉</p> <p>〈신설〉</p> <p>제26조 (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) ①~④ (생략) 〈신설〉</p>	<p>제2조 (정의) _____ _____ 1.~9. (현행과 같음) 9의2. “위탁운송사업”이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로부터 액화석유가스의 운송을 위탁받아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이용하여 소형저장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. 9의3. “위탁운송사업자”란 제6조의3에 따라 위탁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. 10.·11. (현행과 같음) 12. _____ _____ 가스용품 제조사업자, 위탁운송사업자 _____. 13. (현행과 같음) 제3조 (사업의 허가 등) ① _____ _____ _____ _____ 다만, 인구 50만 이상인 시의 경우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제6조의3 (위탁운송사업자의 등록) ① 위탁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 등록된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과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제26조 (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) ①~④ (현행과 같음)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결과 해당 액화석유가스의 품질이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할 수 있다.</p>

현행	개정(안)
<p>〈 신설 〉</p> <p>제52조 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〈 신설 〉</p> <p>2.~6. (생략)</p> <p>〈 신설 〉</p> <p>7.·8. (생략)</p> <p>9. 제33조 제1항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</p> <p>10.~12. (생략)</p> <p>〈 신설 〉</p> <p>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</p>	<p>제38조의2 (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)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·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·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을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지식경제부장관은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경쟁을 촉진하고 액화석유가스 가격의 적정화를 위하여 「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·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·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을 공개한다.</p> <p>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</p> <p>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 <p>제52조 (과태료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1의2. 제3조제4항, 제6조제2항 또는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</p> <p>2.~6. (현행과 같음)</p> <p>6의2. 제2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</p> <p>7.·8 (현행과 같음)</p> <p>9. -----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</p> <p>10.~12. (현행과 같음)</p> <p>13. 제38조의2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,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,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</p> <p>② ----- ----- -----.</p>



현행	개정(안)
<p>1~5. (생략)  6. 제23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공급 방법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 7~12. (생략)  ③·④ (생략)</p>	<p>1~5. (현행과 같음)  6. _____  _____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,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또는 위탁운송사업자  7~12. (현행과 같음)  ③·④ (현행과 같음)</p>
<h3>부칙</h3>	
<p><u>제1조 (시행일)</u>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6조의2·제10조의2·제20조제1항·제21조제2항·제21조제4항 및 제4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각각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<u>제2조 (사업의 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)</u>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3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이나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</p> <p><u>제3조 (위탁운송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)</u> 이 법 시행 당시 위탁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제6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탁운송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.</p> <p><u>제4조 (벌칙 및 과태료 등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)</u>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, 과태료,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</p> <p><u>제5조 (적용례)</u>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이나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.</p> <p><u>제6조 (다른 법령과의 관계)</u>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</p>	